##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



산업통상자원부(가스산업과) 044-203-5237 산업통상자원부(에너지안전과) 044-203-3989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13. 7. 25., 2014. 8. 8.>

- 1. "배관"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(管)으로써 본관, 공급관,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.
- 2. "본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(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(整壓基地)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. 다만,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.
  - 나.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 서 정압기(整壓器)까지 이르는 배관
  - 다.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
  - 라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 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
- 3. "공급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콘도미니엄,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(이하 "공동주택등"이라 한다)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 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(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 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)까지 이르는 배관
  - 나.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 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
  - 다.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 시설까지 이르는 배관
  - 라.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 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
- 4. "사용자공급관"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(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)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.
- 5. "내관"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(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,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)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.
- 6. "고압"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(게이지압력을 말하다. 이하 같다)을 말하다. 다만, 액체상태의 액화가스 는 고압으로 본다.
- 7. "중압"이란 0.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. 다만,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.01메가파스칼 이상 0.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하다.
- 8. "저압"이란 0.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. 다만, 액화가스가 기화(氣化)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0.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.
- 9."액화가스"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.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보호시설"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1. "저장설비"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.
- 12. "처리설비"라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 한 압축기,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.

- 13. "압축가스설비"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.
- 14. "충전설비"란 용기,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(이하 "이동충전차량"이라 한다)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.
- 15. "처리능력"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·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함 수 있는 도시가 스의 양(온도 섭씨 0도,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)을 말한다.
- 16. "정압기지"라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, 계량설비, 가열설비, 불순물제거장치, 방 산탑(放散塔),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.
- 17. "밸브기지"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, 방산탑,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.
- 18. "전처리설비"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(前段)의 설비로서 포집(捕執)된 가스의 1차적 인 탈황(脫黃)・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(포집 설비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- 19. "가스품질향상설비"란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, 압력조정설비, 열량조정설비, 품질모니터링설비, 압축설비, 계량설비 및 부취 제(腐臭劑) 주입설비를 말한다.
- ② 「도시가스사업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1. 11. 4., 2013. 3. 23., 2014. 2. 21., 2014. 10. 7., 2021. 4. 27., 2022. 3. 10.>
- 1.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가.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
  - 나.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 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
  - 가. 발전용: 전기(電氣)를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- 나. 열병합용: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열병합 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(專用)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
  - 다. 수소제조용: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, 설 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 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(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)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
- 4. 삭제 <2020. 8. 5.>

법제처

- ③)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신설 2010, 7. 28., 2011. 11. 4., 2013. 3. 23., 2014. 10. 7., 2020. 8. 5., 2020. 8. 25.>
- 1.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: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 에 충전하는 사업
- 2.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: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
- 3.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: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
- 4.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: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[「항만법 시 행령」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(이하 "야드 트랙터"라 한다)를 포함한다]에 충전하는 사업
- 5.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: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 에 충전하는 사업
-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1 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. <신설 2017. 6. 2.>
-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, 가스배관시설, 가스충전시설, 나프타부생가 스・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14. 8. 8., 2017. 6. 2.>
- 1. 가스제조시설 : 도시가스의 하역·저장·기화·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
- 2. 가스배관시설 :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(공동주택등

- 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,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)까지 이르는 배관·공급설비 및 그 부속 설비
- 3. 가스충전시설: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, 처리설비, 압축가 스설비,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
- 4.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: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 스품질향상설비, 저장설비, 기화설비,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
- 5. 바이오가스제조시설: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, 가 스품질향상설비, 저장설비, 기화설비,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
- 6.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: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, 가스품질향상설비, 저장설비, 기화설비,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
-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"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11. 4., 2013. 3. 23., 2014. 10. 7., 2017. 6. 2., 2020. 8. 5.>
- 1. 내관·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, 다만, 선박(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.
- 2.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
- 3.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
- 4.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
- ⑦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조의4제2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" 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. <신설 2014. 2. 21., 2017. 6. 2., 2020. 3. 24.>

- 제3조(허가신청서 등)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. <개정 2012. 10. 5., 2014. 8. 8.>
  - 1.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: 별 지 제1호서식
  - 2.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: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2호의2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
  - 3.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: 별지 제4호의2서식
  - 4.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: 별지 제4호의2서식
  - 5. 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: 별지 제4호의3서식
  - 6. 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: 별지 제4호의3서식
  - 7. 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: 별지 제4호의4서식
  - 8.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: 별지 제4호의4서식
  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1. 사업계획서
  - 2.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.>
  - 1. 사업계획서
  - 2.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,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3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"한국가스안전공사"라 한다)의 기술검토서
  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「전자정부법」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 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⑤ 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.>

-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8.]
- 제4조(변경허가 사항 등)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 식공급시설(이하 "비상공급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09, 9, 25., 2010, 7, 28., 2014. 8. 8.>
  - 1.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
  - 2.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
  - 3.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, 액화가스 저장탱크, 가스홀더의 종류·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
  - 4. 상호의 변경
  - 5. 대표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변경
  -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0. 7. 28., 2013. 7. 25.>
  - 1. 사업소 위치의 변경
  - 2. 도시가스 종류 변경. 다만,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(危害)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3. 도시가스 압력 변경
  - 4. 저장설비의 교체.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
  - 5.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
  - 5의2.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
  - 6.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 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
  - 7.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(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8.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(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- 9. 상호의 변경
  - 10. 대표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변경
  -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4. 8. 8.>
  - 1. 사업소 위치의 변경
  - 2.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
  - 3.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
  - 4. 제조시설·전처리설비·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
    - 가. 설비의 교체
    - 나. 위치의 변경
    - 다. 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
  - 5. 배관(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을 20미터 이상 설치・증설・이설(移設) 또는 교체하는 변경
  - 6. 상호의 변경
  - 7. 대표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변경
  - ④ 제1항제4호·제5호, 제2항제9호·제10호 및 제3항제6호·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.>
  - 1.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: 별지 제2호의2서식
  - 2.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: 별지 제4호의2서식
  - 3.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: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

- 제5조(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)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(도시가스충전사업, 나프타부생가스· 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)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4호부 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09, 9, 25., 2010, 7, 28., 2014, 8, 8.>
  - 1.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

- 2.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 이고,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
- 3.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
- 4.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
- 5.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)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(천연가스를 가스도매 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)
- 6.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[전문개정 2008, 7, 11.]
- 제6조(허가증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1.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: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
  - 2.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: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
  - 3.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 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: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, 제2항 후단, 제3항 후단,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 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 [전문개정 2010. 7. 28.]

**제7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8조** 삭제 <1999. 7. 1.>

- **제9조(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)**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려는 자는 양도・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2. 5. 23.>
  - 1. 제6조에 따른 허가증
  - 2.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
  -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<신설 2022. 5. 23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)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22, 5, 23,>

[전문개정 2010. 7. 28.]

- 제10조(사업 개시 등의 신고)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, 휴업(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 당한다)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 의 개시·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2. 5. 23.>
  - 1. 개시 신고: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하기 전
  - 2. 휴업 또는 폐업 신고: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

[전문개정 2010, 7, 28.]

제10조의2(나프타부생가스 ·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)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규모"란 1만 세제곱미터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4, 8, 8.]

[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<2014. 8. 8.>]

제10조의3(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)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08, 7, 11.]

[제10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4(과징금 부과기준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 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
[제10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5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8, 7, 11.]

[제10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6(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8. 8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.>
  - 1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, 건설 또는 보유 계획(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)
  - 2.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(수출입 및 판매・사용계획을 포함한다)
  -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4. 8. 8.>
  - 1. 보세구역 현황(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)
  - 2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, 건설 또는 임차 계획(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)
  - 3. 증발가스의 처분계획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목개정 2014. 8. 8.]

[제10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7(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 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 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[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]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14. 2. 21.>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목개정 2014. 8. 8.]

[제10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<2014. 8. 8.>]

제10조의8(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)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
-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<개정 2014. 8. 8.>
-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4일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10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<2014. 8. 8.>]

제10조의9(사업의 개시·휴업 및 폐업신고)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·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 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 업 개시(휴업·폐업)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, 2020. 3. 24., 2022. 5. 23.>

[본조신설 2008, 7, 11.]

[제10조의8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9는 제10조의10으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10(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)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 1항에 따라 처연가스의 수입계약·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·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(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 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)
  - 2.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
  - 3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- ②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·수출계약 또는 수 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 가스 계약(변경)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1.>
  - 1.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·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(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 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)
  - 2.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
  - 3.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- 4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한다) 1부
  -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· 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 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(변경)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, 2015. 7. 1.>
  - 1.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·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(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 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)
  - 2.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.
  - 3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- ④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·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 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(변 경)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8. 8., 2015. 7. 1.>
  - 1.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. 이 경우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어번 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)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10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10은 제10조의11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11(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)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천연가 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(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) 이전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, 2014. 8. 8., 2015. 7. 1.>
  - 1.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
  - 2.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
  - 3.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목개정 2014. 8. 8.]

[제10조의10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<2014. 8. 8.>]

제10조의12(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 다.

[본조신설 2008, 7, 11.]

[제10조의11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12는 제10조의13으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13(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)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 표 1의5와 같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규모,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 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7, 28., 2013. 3, 23.>

[본조신설 2008, 7, 11.]

[제10조의12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13은 제10조의14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14(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,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.
  - ⑤ 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・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
  - 2.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10조의13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14는 제10조의15로 이동 <2014. 8. 8.>]

제10조의15(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 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. 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[제10조의14에서 이동 <2014. 8. 8.>]

- 제10조의16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)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(변경등록)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사업계획서
  - 2.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경 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3. 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②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(변경등록)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영 제6조의7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)를 확인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제10조의17(사업의 개시·휴업 및 폐업신고)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·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(휴업ㆍ폐업)신고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, 8, 5.]

- 제10조의18(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)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 의 수입계약·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(변경)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·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(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 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)
  - 2. 천연가스 파매계획서 1부
  - 3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-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 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.
  - 1.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
  - 2.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
  - 3.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제10조의19(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)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 표 1의6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- 제11조(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 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.
  -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 다.

[전문개정 2008, 7, 11.]

- 제12조(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)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법 제 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22. 5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 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 설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1. 공사계획서
  - 2. 공사공정표
  - 3.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
  - 4.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
  - 5. 삭제 <2009. 9. 25.>
  - 6. 시공관리자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
  - 7.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 설 공사계획 (변경)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,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(변경)승인서 또는 공사계획(변경)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,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"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. <신설 2009. 9. 25., 2013. 3. 23., 2014. 10. 7., 2020. 8. 25., 2022. 5. 23.>
  - 1.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.

- 가. 호칭지름 50밀리미터(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
- 나.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 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
- 2.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
  - 가.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
  - 나.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
  - 다.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(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하다)
  - 라.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
-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
-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22. 5. 23.>
- 1. 시설의 설치계획서(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)
- 2.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(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)
- 3. 도면(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)가)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,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)
-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7. 25.>
- 1.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: 15일
- 2. 공급소, 정압기지,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: 7일
- 3. 배관,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: 5일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13조(공사계획의 승인기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1. 11. 4., 2013. 3. 23.>
  - 1.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
  - 2.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
  - 3.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
  - 4. 시공자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
  - 5. 공사계획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13조의2(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)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2. 5. 23.>
  - 1.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
  - 2.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
  - 3.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
  - 4.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14조** 삭제 <1997. 9. 12.>

- **제15조(시공내용의 통보 등)**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 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 •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 는 변경공사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4.>
  - 1.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
  - 2. 제20조의2제1항(제3호는 제외하다)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
  -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,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
- 10 / 28 -

- 1. 공사기간
- 2. 시설공사내용
- 3. 수요자의 수(數) 및 사용 예정량
- 4.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
- 5. 수요자의 주소 · 성명 및 전화번호
- 6.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

**제16조** 삭제 <1999. 7. 1.>

제17조(시설기준과 기술기준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 음과 같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4. 8. 8., 2020. 8. 5.>

- 1.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: 별표 5
- 2.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: 별표 6
- 3.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 별표 6의2
- 4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 별표 6의3
- 5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 별표 6의4
- 6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 별표 6의5
- 6의2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 별표 6의6
- 7.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: 별표 7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18조** 삭제 <1997. 9. 12.>

**제19조** 삭제 <1999. 7. 1.>

- 제20조(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)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(「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\_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 · 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) 및 완공도면(온수보일러,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)을 작성 · 보존하여야 하며,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(제2 호가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 야 한다. <개정 2013. 7. 25.>
  - 1.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(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함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)
  - 2. 비파괴검사(용융접합)에 따른 도면
  - 3. 비파괴검사 필름
  - 4.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
  - 5.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
  -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(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 에는 그 입력된 자료)을 5년간 보존하고,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(전산보 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)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(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)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 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7. 25., 2014. 10. 7., 2020. 8. 25.> 1. 공급시설: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
  - 2. 가스사용시설[제20조의2제1항(제2호가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]: 7일 이내 [전문개정 2008. 7. 11.]
- 제20조의2(특정가스사용시설)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(이하 "특정가스사용시설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13. 7. 25., 2020. 3. 24.>
  - 1.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(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) 이상인 가스사용시설. 다만,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(가 스터빈, 가스엔진,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)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(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"검사

- 대상기기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.
- 2.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(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)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  - 가.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・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
  - 나.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·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 용시설
- 3.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
- 4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(이하 "자동 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"라 한다)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
- 5.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(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 며, 이하 "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·사용시설"이라 한다)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,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 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4.>

- 제21조(시공감리·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4. 2. 21.>
  - 1.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
  - 2.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
  - 3.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

가. 본관

- 나.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
- 다. 정압기지 내 배관
- 라. 밸브기지 내 배관
- 4.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가.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
  - 나.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
  - 다.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
  - 라.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
- 5.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 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
- 6.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
-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 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0. 7. 28., 2013. 3. 23.>
-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 설 2010. 7. 28.>
- 1.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
- 2.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
- 3.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
- 4.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
- 5.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
- 6. 내진설계(耐震設計)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
-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 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>
- 1.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
- 2.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
- 3.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
  - 가.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

- 나.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·교체 또는 이설(移設)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
- 다.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 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
- 라.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·교체(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
-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특정가스사용시설(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4. 2. 21.>
-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, 9, 25., 2010, 7, 28.>
-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 치공사나 변경공사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20. 3. 24.>
-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3. 7. 25., 2020. 8. 25.>

[제목개정 2010. 7. 28.]

- 제22조(시공감리·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 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 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 7. 25., 2022. 5. 23.>
  - 1.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·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· 변경신고를 한 경우
  - 2.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
  -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 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.
  -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(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)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. 다만.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, 그 사실 및 검사 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 7. 25.>
  - 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 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 사증명서를 발급하고, 제21조제4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 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 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8.]

- 제23조(시공감리·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) ① 법 제15조제1항·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·중 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1. 11. 4., 2014. 8. 8.>
  - 1.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,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. 다만,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 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 야 하다.
  - 2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 자가 그 공사를 시공 • 관리한 것일 것
  - 3. 시공내용이 별표 5, 별표 6, 별표 6의2, 별표 6의3, 별표 6의4,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 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・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4. 8. 8.>
  - 1.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: 별표 5
  - 2.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: 별표 6

- 3.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: 별표 6의2
- 4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: 별표 6의3
- 5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: 별표 6의4
- 6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: 별표 6의5
- 7.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: 별표 7
- 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(이하 "감리원"이라 한다)가 별표 6 제3호다목3), 별표 6의3 제3호,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4. 2. 21., 2014. 8. 8.>
- 1. 가스발생설비(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), 가스정제설비, 열량조정설비, 부취제 주입설비, 가스홀더, 저 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(耐壓)시험이나 기밀(機密)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
- 2.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
- 3.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
- 4.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
- 5.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
- ④ 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4. 2. 21., 2014. 8. 8.>
- 1.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
  - 가.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(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)
  - 나.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(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)
- 2.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
  - 가.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
  - 나.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,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
  - 다.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(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)

[전문개정 2008, 7, 11.]

[제목개정 2010. 7. 28.]

- 제24조(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 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
- 제25조(정기검사)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.
  -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4. 8. 8.>
  - 1.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: 별표 5
  - 2.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: 별표 6
  - 3.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: 별표 6의2
  - 4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: 별표 6의3
  - 5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: 별표 6의4
  - 6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: 별표 6의5
  - 7.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: 별표 7
  -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(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 정어린이집은 10년)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. 다만, 가스공급시설(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, 9, 25,, 2010, 7, 28,, 2013, 7, 25,>
  - 1.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
  - 2.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 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
    - 가.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

- 나.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(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 자공급관은 제외한다)
- 다.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
- 3.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
-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.
-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 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7, 28., 2020. 8, 25.>
-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,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 급하여야 한다.
- ⑦ 한국가스안전공사(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 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)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 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,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(제20조의2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>

- 제26조(수시검사)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. <개정 2009, 9, 25.>
  -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4. 8. 8.>
  - 1.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: 별표 5
  - 2.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: 별표 6
  - 3.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: 별표 6의2
  - 4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: 별표 6의3
  - 5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: 별표 6의4
  - 6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: 별표 6의5
  - 7.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: 별표 7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27조(정기검사의 면제)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
  - 2.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
  - 3.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

- 제27조의2(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)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7. 25., 2014. 2. 21., 2018. 1. 5.>
  - 1. 정밀안전진단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
    - 가.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(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)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(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에서 같다)부 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
   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 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

-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.1메가파스 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(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)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 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
- 라.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 증명서를 받은 날(1998년 8월 31일 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해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가 완 공된 날을 말한다.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)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
- 2. 안전성평가: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

- 제27조의3(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 밀안전진단(이하 "정밀안전진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2. 21.>
  - 1.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
    - 가.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
    - 나.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
  - 2.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
    - 가.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
    - 나.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
  - 3.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
    - 가. 최초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
    - 나. 최초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 는 해
    - 다.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
  -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(이하 "안전성평가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4. 2, 21.>
  - 1.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 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
  - 2.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 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
  -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 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.
  - ④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 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·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4. 2. 21.>
  -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2. 21.>
  - ⑥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 ・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 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 · 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21.>
  - ⑦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2. 21.>
  - 8)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· 제3호라목, 별표 6 제3호라목, 별표 6의3 제3호,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. <신설 2014. 2. 21., 2014. 8. 8.>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27조의4(안전관리수준평가)**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(이하 "안전관리수준평가"라 한다)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

-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다.
-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보고하고.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.
- ⑤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•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. [본조신설 2014. 2. 21.]
- 제27조의5(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)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도시가스사업자"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.
  -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. 5.]

[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7로 이동 <2018. 1. 5.>]

- 제27조의6(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)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(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 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)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기본수행계획서: 다음 각 목의 해

가. 2018년

- 나.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
- 2. 세부수행계획서: 다음 각 목의 해
  - 가.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
  - 나. 제1호나목의 해
-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일부터 60일 이내(보완 기간을 제외한다)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 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 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,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 준,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8. 1. 5.]

- 제27조의7(상세기준 제정·개정 절차)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(이하 "기준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5.>
  - 1.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
  - 2.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
  -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에 부치고, 회의에 부치 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, 번호(개정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), 주요 내용,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 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4. 2. 21.]

[제27조의5에서 이동 <2018. 1. 5.>]

- 제28조(가스공급계획 등)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가스도매사업자,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 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. <개정 2014. 8. 8.>
  - 1.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・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(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 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)
  - 2.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
  - 3.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
  - 4. 시설투자계획
  - 5.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29조(가스의 수급계획) ① 시・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지역별·연도별·사업자별 수요·공급계획
  - 2.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
  - 3.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 - 4. 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5.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>
  - 1. 도시가스의 수요 · 공급 계획(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)
  - 2.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
  - 3. 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
  - 4.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(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
  - 5.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
  - 6. 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
 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  - 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1.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
  - 2.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
  - 3. 천연가스의 투자계획

- 제30조(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)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・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
  - 2. 공사실시계획
  - 3.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(數)
  -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 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.
  - 1.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
  - 2.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·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
  - 3.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

- 4.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[전문개정 2008. 7. 11.]
- 제30조의2(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) 법 제19조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 량수요자"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[본조신설 2014. 2. 21.]
- 제31조(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)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.
  -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 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0. 7. 28.]
- 제31조의2(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)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(도시가스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)을 작성・배포하 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. 26.>
  -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 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2. 21.>
  - ③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, 점검 인원, 점검 장비,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4. 2. 21.> [본조신설 2010. 7. 28.]
- 제32조(공급규정 승인신청서)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1. 공급규정안
  - 2.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
  - 3.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
  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.
  - [전문개정 2008. 7. 11.]
- 제33조(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)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8.>
  -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1. 변경사유서
  - 2. 공급규정의 변경내용
  - 3.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

- 제33조의2(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)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, 2012. 1. 26., 2014. 8. 8.>
  - 1. 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
  - 2.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
  - 3.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
  - 4.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· 사용제한 및 그 해제,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
  - 5.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
  - 6. 도시가스의 성분·열량 및 압력
  - 7.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

## **제34조** 삭제 <1999. 7. 1.>

- 제35조(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)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.
  -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(이하 "품질검사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 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  -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
  -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1. 26.]

제36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)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37조(안전관리규정의 심사)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 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야 하다.
  -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 인에게 보내야 한다. 다만,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38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39조** 삭제 <1999. 7. 1.>

제40조(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)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 정 2009. 9. 25.>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41조(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)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 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확인·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  -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42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43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44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45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46조** 삭제 <1999. 7. 1.>

- 제47조(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) 법 제28조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 춘 자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, 사용시설 점검원,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1. 안전관리 책임자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) 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)가 1명 이상일 것
  - 2. 사용시설점검원(별표 14 제4호나목2) 또는 같은 호 다목2)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)이 가스사용시설 안 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.
    - 가.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
    - 나.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(원격 가스차단,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・차단 및 지진 감지・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)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

- 3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[전문개정 2008, 7, 11.]
- 제48조(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) 법 제28조의2에서 "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7. 1., 2020. 8. 25.>
  - 1.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 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(이하 "용기등"이라 한다)를 철거할 것. 다만, 용 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(이하 이 조에서 "공급자"라 한다)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.
  - 2.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
    - 가.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 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
    - 나.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
  - 3.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
  - 4.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,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 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

[본조신설 2009. 9. 25.]

- 제48조의2(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)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·개축·대수선·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.
  - 1.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
  - 2.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
  - 3. 건축물 공사의 종류·내용·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
  - 4.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
  -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"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,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1. 21.>
  - 1.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
    - 가.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 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(이하 "안전조치 협의서"라 한다)를 작성할 것
    - 나.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
  - 2.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
    - 가.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
    - 나.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
  - 3.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
    - 가.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(차단)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
    - 나.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
    - 다.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

[본조신설 2015. 7. 1.]

제49조(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·해임·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·해임·퇴직 신고서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0. 8. 25.]

- 제50조(안전교육)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・교육기간 및 교육과정,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**제51조** 삭제 <1999. 7. 1.>

제52조(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)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

- 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(이하 "정보지원센 터"라 한다)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 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<신설 2020. 8. 25.>
- 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8. 25.>
- 1.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
- 2.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
- 3. 굴착공사의 종류 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
- 4.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,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|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)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
- 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 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 다. <개정 2015. 7. 1., 2020. 8. 25.>
-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제3 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 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8. 25.>
- ⑤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0. 8. 25.>
- ⑥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토요일 및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8. 25.>
- ⑦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,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 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 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, 9, 25., 2020, 8, 25.> [전문개정 2008. 7. 11.]
- 제52조의2(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)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 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, 표시 사실의 통지,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,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 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. <개정 2009. 9. 25.>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- 제52조의3(굴착공사 개시)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 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20. 8. 25.>
  - 1. 제52조제6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
  - 2.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

[본조신설 2008, 7, 11.]

- 제53조(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) 영 제18조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, 2013. 7. 25., 2022. 1. 21.>
  - 1.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
  - 2.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.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 설된 부분
  - 3.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 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
  - 4.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.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[제목개정 2009. 9. 25.]

제54조(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)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22. 1. 21.>

- 1.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
- 2.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
- 3. 도시가스배관의 이설, 사용의 일시정지, 임시배관의 설치,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(防護工事) 등 안전조 치의 필요성 · 방법 · 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
- 4.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, 참관 시기 및 방법
- 5.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
- ② 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 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, 7, 11.]

- 제55조(굴착공사 협의서 작성)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1.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  - 2.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 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제56조(긴급 굴착공사)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(이하 "긴 급굴착공사"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8. 25., 2022. 1. 21.>

[전문개정 2009, 9, 25.] [제목개정 2020, 8, 25.]

- 제57조(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)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"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"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지하상가 공사
  - 2.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
  -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. 21.>
  -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. 21.>
  -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 10. 7.> [전문개정 2008, 7, 11.]
- 제58조(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)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. <개정 2009. 9. 25.>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[제목개정 2009. 9. 25.]

- 제58조의2(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)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 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1.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 운영
  - 2.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
  - 3.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, 가스안전 영향평가,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
  - 4.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
  -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>
  - 1.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
  - 2. 도시가스배관의 압력·호칭지름 및 재질
  - 3.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
  - 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[제목개정 2009. 9. 25.]

**제59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60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61조** 삭제 <1999. 7. 1.>

**제62조** 삭제 <1999. 7. 1.>

- 제62조의2(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)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.
  -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,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2. 21.>
  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, 9, 25., 2010. 7. 28., 2013. 3. 23., 2014. 2. 21.>
  -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>
  - 1. 공사계획서
  - 2. 공사공정표
  - 3. 변경사유서(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
  - 4.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
  - 5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사본
  - 6.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7. 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- ⑥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, 2014. 2. 21., 2022. 5. 23.>
  - ⑦ 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 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, 2014. 2. 21.>
  - ®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1.>
  - 1.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(변경)승인 · 신고대장에 기록할 것
  - 2.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(변경)승인서 또는 공사계획(변경)신고증명서를 내줄 것
  - 3.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,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 에게 알릴 것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62조의3(공사계획의 승인기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, 2014. 2. 21., 2022. 5. 23.>
  - 1. 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
  - 2. 시공자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
  - 3.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
  - 4.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
  - 5.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도시가스의 흐름 등 도시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
  - 6. 해당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을 것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제62조의4(기술검토)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

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 5. 23.>

- 1.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
- 2.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
- 3. 도면(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)가)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,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)
-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 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제62조의5(가스의 수급계획)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1. 연도별·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
- 2.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
- 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제62조의6(준용 규정)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・제7항, 제22조제1항・제 2항, 제23조,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36조, 제37조, 제40조, 제41조, 제49조, 제50조, 제 52조, 제52조의2,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, 제58조의2,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0, 7, 28, 2014. 2. 21.>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62조의7(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)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 스 ·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,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,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 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., 2020. 8. 5.>
  - 1. 가스공급시설 이용 물량
  - 2. 가스공급시설 이용 대상・범위
  - 3. 공동이용기간

[본조신설 2008, 7, 11.]

- 제62조의8(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)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 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배관시설이용규정안
  - 2.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
  -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5.>
  - 1. 적용 범위
  - 2. 시설 이용요금
  - 3.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
  - 4.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 · 정산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- 제62조의9(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)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변경사유서
  - 2.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
  - 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제62조의10(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)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 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- 1. 배관시설이용요령
- 2.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
-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요령에는 제62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8, 7, 11.]

- 제62조의11(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)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 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•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변경사유서
  - 2.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- 제62조의12(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)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 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조시설이용요령
  - 2.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
  -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적용 범위
  - 2. 시설 이용요금
  - 3.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- 제62조의13(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)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 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변경사유서
  - 2.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

[본조신설 2008. 7. 11.]

- 제63조(보고 등)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 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8. 8.>
  - 1.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가스공급시설의 공사 · 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
  - 3.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
  - 4.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.
  -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"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 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>
  -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"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13. 7. 30.>
  - 1. 지원 범위 및 대상
  - 2.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
  - 3.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

- 제63조의2(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)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(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)
  - 2. 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
  - 3.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
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 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2. 21.]

- 제64조(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)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 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 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 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, 7, 28, 2013, 7, 25,>
  -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(온 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,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)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0. 7. 28.>
  -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제2항(제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금액
  - 2.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. 다만,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**제65조(수수료 등)**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, 시·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 •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08. 7. 11.]
- 제65조의2(정보지원센터의 회계)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7. 11.]

- 제66조(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25.,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08. 7. 11.]
- 제6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"이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. <신설 2010. 7. 28., 2013. 3. 23.>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28.,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, 7, 11.]

[제목개정 2010. 7. 28.]

**제68조** 삭제 <2015. 9. 3.>

- 제69조(규제의 재검토)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 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1.>
  - 1. 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: 2014년 1월 1일
  - 2. 제35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: 2014년 1월 1일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, 12, 31., 2020, 8, 25.>
  - 1.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: 2015년 1월 1일
  - 2. 제10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개시, 휴업 및 폐업의 신고 기한: 2015년 1월 1일
  - 3. 제1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: 2015년 1월 1일
  - 4. 제10조의10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신고 시의 제출서류: 2015년 1월 1일
  - 5.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대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 범위: 2015년 1월 1일
  - 6. 제13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시의 제출서류: 2015년 1월 1일
  - 7.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기준:

2015년 1월 1일

- 8.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기록・완공도면 사본 제출기한 및 보존기한: 2015년 1월 1일
- 9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: 2015년 1월 1일
- 10. 제21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,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: 2015년 1월 1일
- 11. 제23조제2항제2호ㆍ제7호,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및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: 2015년 1월 1일
- 12. 제2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: 2015년 1월 1일
- 13.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항 제6호ㆍ제7호, 별표 5, 별표 6, 별표 6의2, 별표 6의3,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: 2015년 1월 1일
- 14. 제2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포함 사항: 2015년 1월 1일
- 15.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제외 대상: 2015년 1월 1일
- 16.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: 2015년 1월 1일
- 17. 제5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: 2015년 1월 1일
- 18.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포함 사항: 2015년 1월 1일
- 19. 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: 2015년 1월 1일
- 20. 제65조제1항 및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: 2015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14. 2. 4.]

## **부칙** <제466호, 2022. 5. 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